

의안번호	제 70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
조례안

발 의 자	황규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4월 일

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

(황규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4월 일
발 의 자 : 황규철, 김기창, 서동학,
박우양, 연철흙, 전원표,
이상식

1. 제안이유

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건설폐기물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순환골재 사용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, 용도, 의무사용량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- 마. 순환골재 등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바. 순환골재 사용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사.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·법인·단체 등에 대한 포상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

라. 조례안 예고 : 2021. 4. 2. ~ 2021. 4. 8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순환골재 등”이란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.
2. “발주자”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의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.

1.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 및 출장소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
3. 시·군(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② 도지사는 시·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·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
제5조(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) ① 법 제2조제15호 및 제38조에 따라 순환

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(이하 “의무사용건설공사” 이라 한다)는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제6조(순환골재 등의 용도)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.

제7조(의무사용량) 의무사용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「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·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.

제8조(품질기준 등)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.

제9조(실적제출 등)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역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포상)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8조(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)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
2.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
3.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

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,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④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

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조(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) ①법 제2조제15호에서
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·규모·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.

1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(이하 이 조에서 “농어촌도로”라 한다),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

가. 공사구간의 폭이 2.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(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) 이상

나.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(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) 이상

2. 삭제 <2013. 12. 11.>
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

4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,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,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

5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

6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

7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

8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
 9.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
 10.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
 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·규모·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(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)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